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320

발의연월일: 2025. 3. 25.

발 의 자:이헌승·박덕흠·윤상현

김선교 • 서지영 • 백종헌

서일준 • 유용원 • 김도읍

김 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실행위와 유기행위는 엄격하게 구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의미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고, 반려동물 생산업과 판매업은 반려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업종임에도 허가 당시에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는 미충족한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갱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동물생산업과 동물 판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제2조제3호의2 및 제69조제5항·제6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의2(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유실동물"이란 소유자등이 실수나 사고로 잃어버린 동물로서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 3의2. "유기동물"이란 소유자등이 의도적으로 버린 동물로서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 물을 말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실동물 및 유기동물

제35조제3항제7호 중 "유실·유기동물"을 "유실동물·유기동물"로 한다.

제36조제4항제7호 중 "유실·유기동물"을 "유실동물, 유기동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유실·유기동물"을 "유실동물, 유기동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실동물 및 유기동물

제49조제1호 중 "유실·유기동물"을 "유실동물·유기동물"로 한다. 제6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생산업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동물생산업이나 동물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3조제1항제5호 중 "제69조제4항"을 "제69조제4항, 같은 조 제6항"으로, "변경허가"를 "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로 한다.

제85조제1항제1호 중 "제69조제1항"을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6항"으로. "허가"를 "허가 또는 갱신허가"로 한다.

제94조제1항제4호 중 "유실·유기동물"을 "유실동물·유기동물"로 한다.

제97조제2항제9호 중 "제6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허가, 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허가 또는"을 "허가"로, "변경허가"를 "변경허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갱신허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유실동물"이란 소유자등이
	실수나 사고로 잃어버린 동물
	로서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
	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
	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
	<u>다.</u>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	3의2. "유기동물"이란 소유자등
•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	이 의도적으로 버린 동물로서
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
	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	
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	
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	
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	
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 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 에서 제외한다.

- 1. 유실 유기동물
- 2. · 3.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7
 - ① · 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 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 6. (생 략)
 - 7. <u>유실·유기동물</u> 발생 예방 교육
 - 8. 9. (생략)
 - ④ ~ ⑦ (생 략)
-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7
 - ① ~ ③ (생 략)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1. 유실동물 및 유기동물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	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u>유실동물·유기동물</u>
세	1. ~ 6. (현행과 같음) 7. <u>유실동물·유기동물</u> 8. · 9. (현행과 같음)
줴	 ∼ 6. (현행과 같음) 큐실동물・유기동물 8. · 9.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쉐	1. ~ 6. (현행과 같음) 7. 유실동물·유기동물 8. · 9.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梸	 ~ 6. (현행과 같음) 유실동물·유기동물 8. · 9.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세	 ~ 6. (현행과 같음) 유실동물·유기동물 8. · 9.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	 ~ 6. (현행과 같음) 유실동물·유기동물 8. · 9.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세	 ~ 6. (현행과 같음) 유실동물·유기동물 8. · 9.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6. (생략)
- 7. 특별한 사유 없이 <u>유실·유</u> <u>기동물</u>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 8. (생략)
- ⑤ · ⑥ (생 략)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제39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

1. ~ 6. (현행과 같음)
7 <u>유실동물,</u>
<u>유기동물</u>
8.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유실동물, 유기동물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9조(신고 등)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	나	4)	해	당
하늮	= 5	동물	을	발견	한	때	게는	<u>.</u>	관
할	기	방자.	치단	<u></u> - 체	또	는	동	물	보
호/	센터	에 4	신고	<u>.</u> 할	수	있ㄷ	} .		

- 1. (생략)
- 2. 유실 유기동물
- ② ~ ④ (생 략)
-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 돈 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것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봉사동물의 선발·훈련방식에 관한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제52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u>유실·유기동물</u>(보호조치 중 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 으로 하는 실험
 - 2. (생략)
-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 ④ 저 (생 략) <신 설>

2. 유실동물 및 유기동물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1 0시도므 0기도므
1. <u>유실동물 · 유기동물</u>
2. (현행과 같음)
에69조(영업의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생

<신 설>

제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저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 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다.

- 1. ~ 4. (생략)
- 항에 따른 <u>변경허가</u>를 받거나

산업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 허가의 유효기	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	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동물	<u> 물생산</u>
업이나 동물판매업을 영역	위하려
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터	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①	

· 1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69조제4항 또는 제73조제4 5. 제69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坩	경.	두호	= 0	하지	아니	하	경우
7'		$\circ =$	7 7	01/1	954	Υı	78 T

- 6. ~ 9. (생략)
- ② · ③ (생 략)
- 제85조(영업장의 폐쇄) ① 특별자 지치자 · 특별자 기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69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영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 제69조제1항에 따른 <u>허가</u>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3조제1항 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2. (생략)
 - ② ~ ⑤ (생 략)
-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 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경허가 또는 갱신허가
6.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세85조(영업장의 폐쇄) ①
<u>.</u>
1. <u>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6항</u>
<u>허가 또는 갱신허가</u>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세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과공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 4.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 10. (생략)
- ② ~ ⑤ (생 략)

제97조(벌칙)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8. (생략)
- 9. <u>제69</u>조제1항 또는 같은 조 <u>제4항</u>을 위반하여 <u>허가 또는</u> <u>변경허가</u>를 받지 아니하고 영 업을 한 자
-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제1항에 따른

1. ~ 3. (현행과 같음)
4
<u>유실</u>
<u>동물•유기동물</u>
5. ~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세9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2
,
1. ~ 8. (현행과 같음)
9.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u>또는 같은 조 제6항</u>
허가, 변경허가 또는 갱신
<u>허가</u>
10

<u>허가 또는</u>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u>변경허가</u>를 받은 자

11. ~ 14. (생 략)

③ ~ ⑥ (생 략)

<u>허가</u>-----변경허가 또는 같은 조 제6항 에 따른 갱신허가-----

11. ~ 1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